

2024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당업무
일반 임기제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 입안·검토 등에 관한 사항○ 의안 관련 발굴,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관련 기획,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분석○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 자문 및 쟁송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현안 검토 및 의견서 작성, 기타 의정 활동 및 일반행정지원 등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담당업무
한시 임기제	입법조사관 <농정해양전문위원회실> [재공고]	지방한시임기제 6호	1명	—	주35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입법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개정안, 청원, 건의안, 결의안 등 기초 조사(자료수집), 초안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 ○ 위원회 연구활동 및 정책 발굴 등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추진, 의원 연구단체 지원, 토론회, 간담회 등 추진 ○ 위원회 입법 · 정책활동 홍보(보도 자료 등) ○ 전문위원회 각종 의정활동 및 행사 지원 등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안성 소재] <의정정책담당관*>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주35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담소 운영 및 총괄관리(시설·장비, 환경관리 포함) ○ 정책건의, 상담신청 등 접수처리 지원 ○ 건의상담 등의 운영실적 작성 및 보고 ○ 상담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자료 조사 등 상담 지원 ○ 상담소 내 정담회·회의, 상담 성과 등 보도자료 작성 ○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 방문자·민원인 응대 및 비상연락 유지 ○ 기타 행정지원 업무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입법조사관(지방한시임기제 6호)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일 ~ '25.6.30.까지임
- ※ 「2024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위 **[재공고]** 분야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3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도민권익담당관 ⇒ 의정정책담당관)

2.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마.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 별표 4의3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격기준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담당관>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법제사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요건 : 법학 학위 취득자 또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입법조사관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지방한시임기제 6호 [재공고]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법제사무 또는 공공행정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농업, 산림, 해양, 수산, 축산 관련 근무경력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격 기준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안성 소재] <의정정책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공고]	<p>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무분야 : 행정업무 또는 일반사무 업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 '2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 있거나, '24. 1. 1. 이전까지 경기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p>※ 同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4의3)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 · 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AI역량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역량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검사방법 :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질문에 답변(영상)
- 역량검사 일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발표면접 : 임용분야 관련 문제에 관한 답변을 자필로 작성한 후 발표 (응시자의 발표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및 논리력 평가)
 - 역량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사전조사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질의응답(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파악)

※ 면접 시작 전 면접자료 60분간 작성(발표면접 자료 45분, 사전조사서 15분)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4. 15.(월) ~ 4. 17.(수) /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 : 1만원 / 6,7급(나급, 다급, 7호) : 7천원 / 8,9급(라급, 마급, 9호) : 5천원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환급 가능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우편봉투 곁면에 '2024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다. 접수처 :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채용교육팀(031-8008-7381~3)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5층 총무담당관 우)16508

○ 찾아오는 길

- (도보)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보행진입로 참고)

- (자가용) 지하주차장 2, 3번 게이트



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시험 공고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2024. 04. 05.(금) 전 · 후
원서 접수	2024. 04. 15.(월) ~ 04. 17.(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 04. 26.(금) 전 · 후
면접시험	2024. 05. 08.(수) 전 · 후
최종합격자 발표	2024. 05. 10.(금) 전 · 후
임용예정시기	2024. 5월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름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담당관>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81,239천원	54,132천원
입법조사관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지방한시임기제 6호	2,465,700원/월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의정정책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1,680천원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지역상담소 운영요원의 경우, 위 표의 연봉액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직위(동일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심의 가능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열린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후 채용교육팀에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 동봉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10. 경력(재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인정 범위 해당 분야의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지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 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 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 증명(폐업지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11. 기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필수 자격의 경우 해당 서류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제출
※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준 영리 ·

비영리업무를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채용교육팀 (031-8008-7381~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래 표 참조

임용예정 분야	직무관련 주무부서	연락처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담당관	031-8008-7282
입법조사관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2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의정정책담당관	031-8008-7272